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8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4. 29.

발의자 : 홍익표 · 강창일 · 김민기
권미혁 · 소병훈 · 김영호
김한정 · 김병관 · 표창원
전혜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“재정안정화기금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 법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“통합관리기금”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이와 같이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용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유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고, 기금 이외에 다른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음.

이에 따라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용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용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”을 설치하는 한편(안 제16조 제1항), 기

금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이 있는 다른 회계로부터도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).

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, 기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통합관리기금의 명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함(안 제19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흥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재정법」(의안번호 제2487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2.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
3.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운용지원을 위한 예탁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타 회계로부터의

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9조제1호 및 제3호 중 “통합관리기금”을 각각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“재정안정화기금” 및 “통합관리기금”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이 법에서 정한 “재정안정화 계정” 및 “통합 계정”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6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</u>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<u>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</u>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.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 3.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<p>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운용지원을 위한 예탁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 한 경비

<신 설>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
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

<신 설>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<신 설>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

